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 '별표'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중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

제1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### 권한 위임 사무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교통행정과	1 - 3	(현행과 같음)	
	4	○ 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	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
	5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	동법 제16조
	6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을 대행하는 자의 지정	동법 제17조
	7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 명령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	동법 제18조
	8	○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와 해임명령	동법 제36조
	9	○ 차고시설확보신고의 수리	동법 제37조 제2항
	10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,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신고의 수리	동법 제44조
	11	○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	동법 제45조 제2항
	12	○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의 변경, 사업의 양도·양수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개시,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신고수리	동법 제51조
	13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보고, 검사 또는 질문	동법 제66조 제2항, 제3항
	14	○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문	동법 제67조

# 신 구 문 대 조 표

행				개			
분	업	행	행	분	업	행	행
별	연	사	근	분	일	사	근
번호	번호	무	거	야	련	무	거
번호	번호	무	거	야	련	무	거
번호	번호	무	거	야	련	무	거
교통 행정 국	1-3	(생략)	(생략)	교통 행정 국	1-3	(천행과 같음)	
					4	○ 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	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
					5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	등법 제16조
					6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을 대행하는 자의 지정	등법 제17조
					7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	등법 제18조
					8	○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와 해임명령	등법 제36조
					9	○ 차고시설확보 신고의 수리	등법 제43조 제2항
					10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,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	등법 제44조
					11	○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	등법 제45조 제2항
					12	○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의 변경사업의 양도·양수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개시,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신고수리	등법 제51조
					13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보고, 검사 또는 질문	등법 제66조 제2항, 제3항
					14	○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문	등법 제67조